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27.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8716	김한규의원	2025.3.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8.26.)
2214327	이양수의원	2025.1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11.24.)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25.)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25.11.27.)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진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생략)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u>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u>제1항에 따른 진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u> -----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 ----- ----- ----- -----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u>.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 · 3. (생략) ④ ~ ⑦ (생략)	1. ----- ----- ----- ----- ----<u>의료기관</u>. ---- ----- ----- -----.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